

합 의 서

갑과 을은 아래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를 작성한다.

구분	갑 (피해자 쪽)	을 (상대방)
성명	_____	_____
생년월일	20____년 ____월 ____일	20____년 ____월 ____일
주소	_____	_____
연락처	_____	_____

사건 일자	20____년 ____월 ____일
사건 장소	_____
사건 경위	_____ _____

제1조 (합의금)

을은 갑에게 위 사건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으로 금 _____ 원 整 을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갑의 계좌(_____)로 지급한다.

제2조 (추가 합의 사항)

제3조 (효력 발생)

이 합의는 제1조의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때 효력이 생긴다. 을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갑은 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.

제4조 (부제소)

갑은 합의금을 모두 받은 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을에게 민사상·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비밀유지)

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합의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다.

이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____년 ____월 ____일

갑 : _____ (인)

을 : _____ (인)